산업통상자원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0. 18.(화) < 10.18.(화) 석간 >	배포 일시	2022. 10. 17.(월)

담당 부서	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	책임자	과 장	황윤길 (044-203-3980)
		담당자	사무관	최재영 (044-203-3982)
			사무관	정해진 (044-203-3984)

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등 「전기안전관리법」 개정법률안 공포

- 사용전점검 기관 일원화는 '23.4.19일,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은 '23.10.19일부터 시행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**전기안전관리체계를 개선**하기 위한 **「전기안전관리법」 일부개정법률안**이 10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**10월 18일 공포**되었다고 밝혔다.

□ 금번 개정법률안은 일반용전기설비(용량 75kW 미만) **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**, **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**에 대해 **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**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, **개정안 주요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❶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기관 일원화

□ 일반용전기설비(용량 75kW 미만)에 대한 **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**한다.

○ 그동안,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(사용 중)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나, **사용전점검은 2개의 기관**(전력공사, 전기안전공사)**으로 이원화 운영**되어 왔다.

○ 이로 인해, **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**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,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**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**되어 왔다.

○ 이에, 법률개정을 통해 **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**하여 전기설비의 **설치부터 운영까지 안전점검 이력관리를 강화**하고, 점검 업무의 **실효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**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.

❷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 확대

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**부담을 완화**하고, **보급 활성화**를 위해 **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**에 대해 **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*을 허용**한다.

* 태양광발전설비 1,000kW 미만 / 수력, 풍력, 바이오 등 기타 신재생E 설비 **300kW 미만**

○ 현재, **전기안전관리대행*** **범위**는 **태양광발전설비**(용량 1,000kW 미만)**와 연료전지 발전설비**(용량 300kW 미만으로 **원격감시·제어기능**을 갖춘 설비)**로 한정**하고 있다.

* 전기설비의 공사·운용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(직접고용)해야 하나, 소규모 전기설비의 경우 전문업체 등에게 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하는 제도

○ **소규모 발전설비 사업자**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직접 선임으로 인한 **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**을 겪고 있으며, 이는 **신재생에너지 보급·확산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**하고 있는 실정이다.

□ 이에, **민간투자 촉진 및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**하기 위하여 **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이 가능한 범위**를 현행 태양광, 연료전지 발전 뿐만 아니라, **원격감시·제어기능을 갖춘 경우**에는 **풍력·바이오** 등 **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확대하도록 개선**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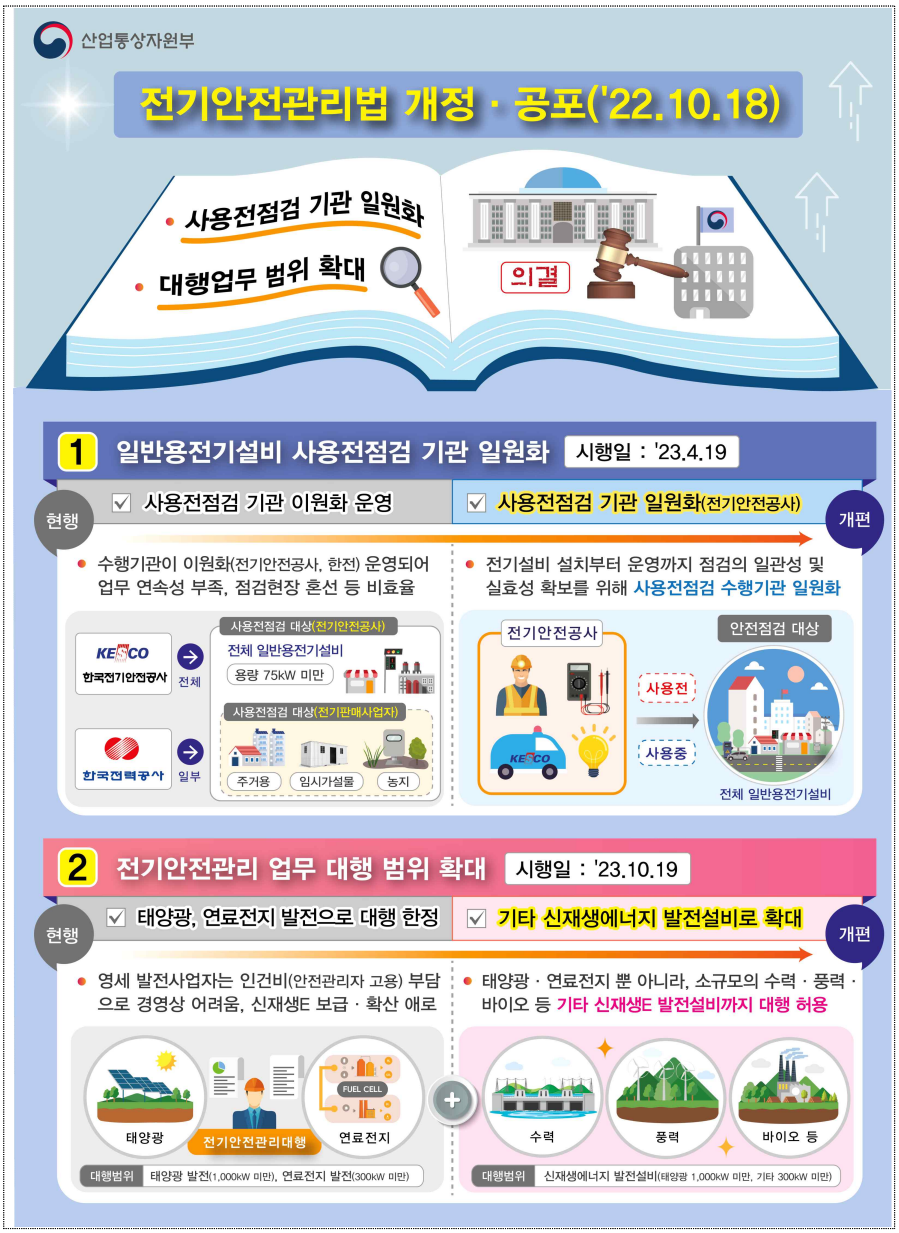
□ 산업부 관계자는 "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를 통해 일반용전기설비의 **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**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 **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제도가 정착**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" 라고 밝혔다.

○ 더하여, "기존 태양광·연료전지 발전에 대해서만 허용하였던 안전관리 대행 범위를 기타 **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확대하여,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·확산에 기여할 것**" 이라고 평가했다.

□ 금번 개정된 법률안은 관련 하위법령·고시 개정 등을 통해 **❶사용전점검 기관 일원화 안건은 공포 후 6개월**이 경과한 날('23.4.19.)부터,

○ **❷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 안건은 공포 후 1년**이 경과한 날('23.10.19.)부터 **시행될 예정**이다.

《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》

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